

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신청기관의 소재지	전화번호/팩스번호	
신청범위	(필요 시 별지 사용)		

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0조의2제2항·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2.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.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 5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.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